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23 선고 2021가단5125269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

##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웅빈

담당변호사 정인지

피 고 B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도명옥, 백원우

변 론 종 결 2021. 12. 8.

판 결 선 고 2022. 2. 23.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07,09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9.부터 2022. 2.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9,048,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9.부터 이 사건 2021. 11.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는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C은 2018. 10. 25. 07:30경 원고 차량(별지 사고현장약도의 #1 차량)의 적재함에 굴삭기를 적재한 상태에서 별지 사고현장약도 기재와 같이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맞은편 32번 국도의 오른쪽에 있는 합류도로에서 위 국도로 진입하고자 왼쪽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위 국도 편도2차로 중 2차로로 진입하였는데, 진입 직후 위 2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F이 운전하는 피고 차량(별지 사고현장약도의 #2 차량) 앞부분과 원고 차량 뒷부분 적재함에 적재된 굴삭기 버킷이 충돌하여 피고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G가 같은 날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망 G의 유족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94,356,980원<sup>1)</sup>을 2021. 9. 28.까지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원고 및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의 지위에 있는데 그 내부적 부담부분 비율은 각 5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49,048,490원(= 94,356,980원 x 50%)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판단

## 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성립

1)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불법으로 개조한 적재함에 6톤 무게의 굴삭기를 적재하여 굴삭기의 버킷 부분이 적재함 밖으로 돌출되도록 한 상태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양보표시가 있는 합류도로에서 본도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그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동승자와 대화하며 보관함에서 서류를 꺼내보는 등 주의를 분산하여 진입하고자 하는 본도로의 전후좌우를 살피지 않고 운전함으로써 때마침 본도로 뒤편에서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피고 차량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입하여 운전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도록 한 잘못이 있다.

2)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합류도로의 직선길이가 약 85m로 길고 시야를 가릴 만한 도로 상황이 없으므로 오르막도로를 올라와 합류도로를 시속 약 40km로 서행하는 덤프트럭 차량(원고 차량)을 사고 이전에 발견할 수 있었고 실제로도 차량의 존재와 움직임을 목격하였으므로 원고 차량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여 살피면서 충분히 감속하거나 차로를 변경하는 등으로 사고를 피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함에도 만연히 원고 차량이 합류도로에 정차하거나 피고 차량이 지나간 후 진입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한속도(시속 80km)를 초과하여 시속 87~88km로 계속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이 들어오자 피하지 못하고 1~2초만에 충돌한 잘못이 있다.

3)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원고 차량 운전자 및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인바,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면,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내부적 부담부분 비율은 원고 차량이 70%, 피고 차량이 30% 정도로 봄이 타당하다.

## 나. 구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1)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69712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망 G의 유족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정당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는 94,356,98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의 내부적 부담부분 비율에 해당하는 28,307,094원(= 94,356,980원 x 30%) 상당이 공동면책된 이상 피고는 위 공동면책된 부분에 대해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 다. 소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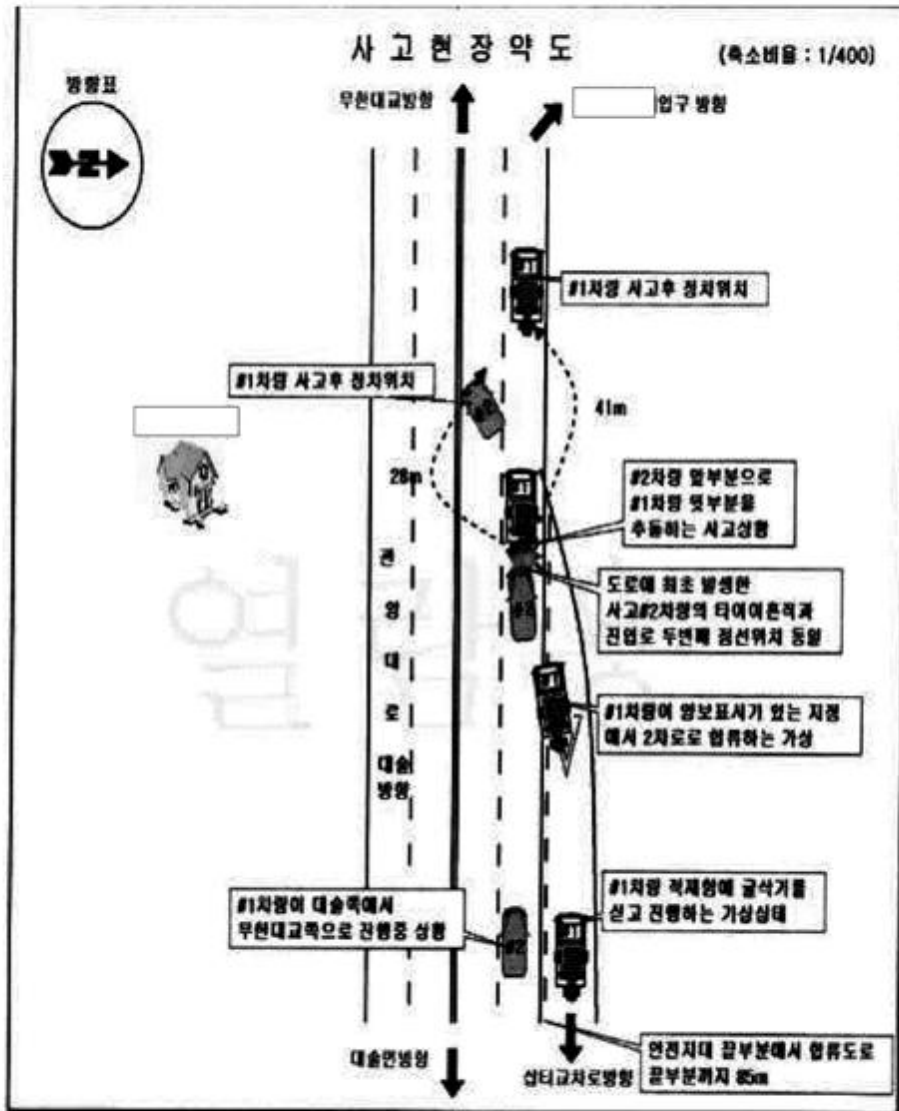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구상금 28,307,09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돈을 최종 지급한 다음날인 2020. 9. 2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2.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백규

[별지]



1) 원고가 피해자의 유족들이 원고 및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18가단5258343 판결)에 기해 지급한 돈 108,096,980원에서 변호사 선임료와 원고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10,000,000원을 제한 금액이다.